

첨단·유망산업 수출 「PLUS+ 전략」

- 보세가공수출 규제혁신 방안 -



2025. 11.

통 관 국
보세산업지원과

순 서

I. 추진배경	1
II. 추진방향	2
III. 추진과제	3
1. Pioneer : 신기술 · 신산업 지원	
① 첨단산업 연구소 등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	3
② 항공기 MRO 산업 유치를 위한 FTZ 반입승인 절차 간소화	4
③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	5
2. Lower : 비용 · 세금 절감	
① 첨단 클러스터 보세건설부터 보세공장까지 관리 일원화	6
②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혼합·제조 절차 간소화	7
③ 보세공장 제품의 과세방식 선택 기한 연장	8
3. Uplift : 신속성 · 효율성 향상	
① 야간·공휴일에 先사용 後사용신고 확대	9
② 보세공장 수출물품에 대한 특송차량 활용 보세운송 허용	10
③ 우수보세공장의 「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신속화	11
4. Self-Manage : 자율관리 확대	
① 자율관리보세공장 「내국작업 허가」 생략	12
② 자율관리보세공장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허가」 생략	13
③ 자율관리보세공장 「장외 일시장치 허가」 생략	14
IV. 향후 추진계획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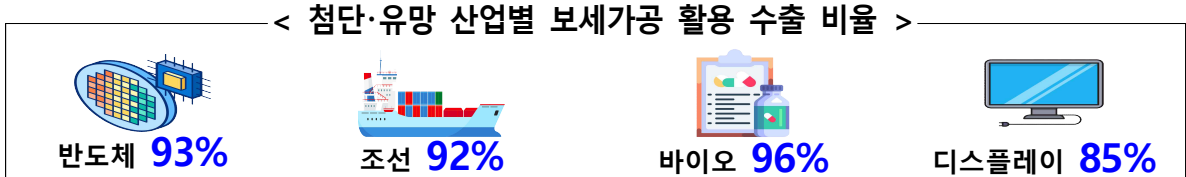
I. 추진 배경

1 미국의 고세율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 급변과 국가간 기술 경쟁 심화

- **[통상환경]** '25년 수출은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미국의 고세율 관세정책 등 무역환경이 급변으로 수출 불안요소* 상존
* 전년 기저효과와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0.6%~0.9% 성장) 전망
- **[경쟁 심화]** AI·반도체·조선 등 첨단산업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수출통제* 및 초격차 기술 경쟁 심화에 따른 어려움 가중
* (중국) 희토류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10.9.), (미국) 반도체장비 수출간소화 폐지예고(8.29.) 등

2 첨단·유망산업 수출 및 국정과제 수행에 보세가공제도 활용 필수

- **[보세가공 수출]**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유망 산업별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 비율은 90% 수준으로 매우 높음



- **[국정과제 연계]** 국정과제 “미래 첨단산업 육성” 관련 초격차 기술 선점, MASGA 지원, 북극항로 개척 등에서 보세가공제도 활용* 필수
* 보세상태로 신제품 개발, 외국적 선박 건조·수리, 종합보세구역 선박 연료 블렌딩 등

3 수출업체는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요청

- **[업계 요청]** 첨단·유망산업의 수출환경 변화 대응 및 수출 향상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기업지원 요청

◆ 보세가공수출 규제혁신 「PLUS+ 전략」 추진으로 첨단·유망산업의 육성 및 수출 경쟁력 향상

➔ **P** 신기술·신산업 육성, **L** 비용·세금 절감, **U** 효율성 향상, **S** 자율관리 확대

* Pioneer, Lower, Uplift, Self-Manage

II. 추진방향

목표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
PLUS+ 전략	P 신기술·산업 지원, L 비용·세금 절감, U 효율성 향상, S 자율관리 확대 <small>* Pioneer, Lower, Uplift, Self-Manage</small>
4 대 전략 12 개 추진 과제	1. (Pioneer) 신기술 · 신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첨단산업 연구소 등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 ② 항공기 MRO 산업 유치를 위한 FTZ 반입승인 절차 간소화 ③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
	2. (Lower) 비용 · 세금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첨단 클러스터 보세건설부터 보세공장까지 관리 일원화 ②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혼합·제조 절차 간소화 ③ 보세공장 제품의 과세방식 선택 기한 연장
3. (Uplift) 제조 신속성 · 효율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야간·공휴일에 先사용 後사용신고 확대 ② 보세공장 수출물품에 대해 특송차량 활용 보세운송 허용 ③ 우수보세공장의 「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신속화 	
4. (Self-Manage) 자율관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율관리보세공장 「내국작업 허가」 생략 ② 자율관리보세공장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허가」 생략 ③ 자율관리보세공장 「장외 일시장치 허가」 생략 	

Ⅲ. 추진과제

1. (Pioneer) 신기술 · 신산업 지원

① 첨단산업 연구소 등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

◇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연구 시제품 및 중간 시제품의 제조·검사와 해당 작업장소(연구소 등)를 보세공장 특허 대상에 포함

□ **[현황]** AI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는 초격차 기술 경쟁 중이며, 이는 수출 확대와 미래 먹거리 확보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

○ 첨단산업계는 연구 시제품의 제조·검사와 해당 작업 장소(연구소 개발실, 검증실, 검사실, 테스트실 등)를 보세공장으로 특허해 줄 것을 지속 요청

□ **[문제점]** 연구소 등은 보세공장이 아니므로, 시제품의 제조·검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해야만 연구에 사용 가능

○ 초단위 경쟁에서 매번 수입통관에 따른 시간 지체로 시제품 제조·검사 지연*(야간·휴일 가중) ➔ 수출·기술 경쟁력 하락

* 주말·야간 포함 평균 4시간, 평일 야간 최대 9시간, 공휴일·명절 등 최대 5일

□ **[규제혁신]** 시제품 및 중간 시제품의 제조·검사와 해당 작업장소를 보세공장 특허 대상에 포함

기 존	개 선
시제품 제조·가공 및 해당 연구소 등은 보세공장 특허 불허	시제품 제조·가공 및 해당 연구소 등을 보세공장 특허 대상에 포함

□ **[기대효과]**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신속한 연구 개발로 초격차 기술 선점, 수출 주도권 확보 및 미래 먹거리 확보 기여

■ **[가상 사례]** 반도체 보세공장 S사는 HBM 개발에 사용되는 외국 원재료 등을 그동안 수입통관한 후 연구소에 반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번에 연구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 받아서 수입통관 없이 신제품 개발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신제품 HBM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N사와 수출계약도 성사되었다.

2 항공기 MRO 산업 유치를 위한 FTZ 반입승인 절차 간소화

◇ 항공기 MRO(정비·수리·개조) 산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MRO 대상 항공기 및 부분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승인절차 간소화 및 MRO 거점 육성 지원

□ **[현황]**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자유무역지역^{FTZ}) 입주업체가 국내 첫 대형화물기 개조*(P2F MRO) 사업 개시 예정('25.12월)

*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Passenger to Freighter), 항공회물 수요 급증에 따라 수요 증가

○ 항공기 및 부분품은 수입제한품목으로, FTZ 반입 시 '(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KAIA}'와 협의 후 세관장의 반입승인 필요

□ **[문제점]** 반입승인 시 품목별·건별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승인 신청이 번거롭고, 승인에 많은 시간 지체 발생

○ 또한, 관련 규정상 정비·수리는 기타(부호 79)로 분류되는데, 기타 부호는 개조 작업에 필요한 사용소비신고* 불가능

*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것

□ **[규제혁신]**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물품은 FTZ 반입승인도 면제되도록 FTZ법 개정, 개정 전까지는 포괄승인절차를 마련 운영

○ 항공기 MRO 업종 관리부호를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사용소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구분	현행	개선
반입승인	건별 승인	포괄승인 → 향후 면제
관리부호	기타(79)	제조업(41)

□ **[기대효과]** 항공기 MRO 산업 유치 및 활성화를 통한 항공기 MRO 거점 육성으로 새로운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및 외화획득 기대

■ **[가상 사례]** 항공기 MRO 전문업체 S사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B777 노후 항공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항공기의 FTZ 반입승인 간소화로 신속한 개조작업이 가능해져 4개월 짧은 기간에 항공기 개조를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었으며, 새로운 물량 유치도 가능해 졌다.

③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

◇ 친환경 선박유를 블렌딩(혼합제조)해서 북극항로 선박 등에 공급·판매할 수 있도록 부산과 인근지역의 오일탱크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확대

- **[현 황]** 북극항로 개척은 정부 국정과제로서 우리나라 최대항인 부산은 국제무역선 선박유 공급(병커링)과 북극항로 개척의 최적지
 - 부산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블렌딩* 후 공급하면 운송비용·시간 대폭 단축으로 수출 확대와 북극항로 거점으로 도약 가능
 - * 국산석유제품과 외국석유제품의 블렌딩은 종합보세구역에서만 가능

- **[문제점]** 부산지역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오일탱크 업체는 2곳 (55기)으로 울산, 평택, 여수에 비해 부족함
 - 현재는 울산·여수·평택에서 블렌딩 후 운반선으로 이동 후 병커링 함으로써 추가 운송비용 및 적기 공급 곤란

<전국 종합보세구역 탱크터미널 현황>

구분	울산	평택	여수	부산	군산	대산	합계
탱크터미널 수	10개	6개	4개	2개	1개	1개	24개

- **[개선방안]** 친환경 선박유를 블렌딩해서 북극항로 선박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부산 및 인근 지역 오일탱크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확대

구분	현행	개선
종합보세구역 탱크터미널	2개(55기)	추가 지정 (HD현대오일뱅크 등 예정)

- **[기대효과]** 부산을 북극항로 전진기지 거점으로 육성, 병커링 추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가상 사례] 부산에서 오일탱크를 운영하는 H사는 그동안 오일 블렌딩 없이 오일 단순 보관 후 병커링 또는 타지역에서 블렌딩 후 보관 및 병커링 하였으나,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부산에서 직접 친환경 선박유를 블렌딩 하여 판매가능 하여 북극항로를 운행하는 선박에 병커링이 증대되고 매출이 증가하였다.

2. (Lower) 비용 · 세금 절감

1. 첨단산업 클러스터 보세건설부터 보세공장까지 관리 일원화

◇ 반도체 등 첨단 클러스터 구축 시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 상이로 발생하는 신고오류, 비용발생, 구축지연 등을 방지를 위해 관할세관 일원화

□ **[현황]** 반도체 등 첨단산업 대부분은 보세공장이며, 건설 시점에는 ‘보세건설장’으로, 완공 후에는 ‘보세공장’으로 전환하여 특허·운영

■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반도체 국가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중
 * 삼성전자 팹 6기 신설(360조원), SK하이닉스 팹 4기 신설(122조원) 등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 신규 공장 완공 후에는 30km 이내의 기존 보세공장과 ‘단일보세공장*’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①건설 중과 완공 후의 관할세관이 달라질 수 있고, ②한 클러스터를 여러 세관이 관할하는 사례 발생

* 동일기업 2개 이상 보세공장을 1개처럼 관리. 이들 간에 보세운송·반출입신고 등 생략

□ **[문제점]** 보세공장(단일보세공장)과 보세건설장의 관할세관 상이*로 업무혼선, 신고오류 등 건설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



□ **[규제혁신]** 완공 후 기존 보세공장과 단일보세공장으로 통합이 예정된 경우 보세건설장을 기존 보세공장 관할세관에서 보세건설 단계에서 특허·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구분	현행	개선
보세건설장 관할세관	소재지 관할세관	통합예정인 기존 보세공장 관할세관

□ **[기대효과]** 보세건설장과 완공 후 보세공장의 관할세관 일원화로 업무 혼선 방지, 신고 오류 방지 및 클러스터 구축기간 단축으로 비용 절감

■ **[가상 사례]** 국내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 중인 S사는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 상이로 신규 공장 건설 후 B세관 관할 임에도 A세관에 신고를 하는 등 업무혼선과 신고오류가 빈번했다.
 하지만, 이번에 관할세관이 일원화 되면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신고 오류 방지 등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되어 연간 3,628억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2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혼합·제조 절차 간소화

◇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등을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후 수출하려는 경우, 보세운송 시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블렌딩용 액체 탱크에 직반입 허용

*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 보관, 전시, 판매 등 2가지 이상 수행이 가능한 보세구역

□ **[현황]** 석유제품 등을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하기 위해 선박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함

○ 또한, 환급대상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먼저 빈 탱크에 반입하여 검사한 후 다시 혼합용 탱크로 재이송해야 함

* 정유(화학)사 반출 → 운송(선박) → 종합보세구역 반입 → 빈 탱크 반입 → 반입확인서 발급신청 → 중량 등 검사 → 확인서 발급 → 블렌딩용 탱크 반입 → 타제품과 혼합 제조

□ **[문제점]** 석유제품 등은 대용량·고가 물품으로 담보 제공 시 많은 비용 발생으로 업체에 금융부담 증가

○ 또한, 빈 탱크와 혼합용 탱크 간 재이송에 2~3일이 더 소요되고, 항상 빈 탱크를 유지해야 하므로 해당 탱크 활용 불가

□ **[규제혁신]**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보세운송 담보제공을 면제하고, 혼합용 탱크에 직반입 허용

구분	현행	개선
보세운송	종합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 시 담보제공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종합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 시 담보제공 면제
환급대상물품 반입절차	빈 탱크에 반입하여 검사한 후 다시 혼합용 탱크로 재이송	혼합용 탱크로 직반입*

* 정유(화학)사 반출 → 운송(선박) → 종합보세구역 반입 → 블렌딩용 탱크 직반입 → 중량 등 검사 → 타제품과 혼합 제조

□ **[기대효과]** 석유화학 업체 등의 보세운송 비용절감, 신속한 블렌딩 투입, 탱크 활용 제고를 통한 석유 및 석유화학업체 매출 증가

■ **[가상 사례]** 석유화학업체 H사는 평택에서 바이오유를 담보제공 없이 부산항으로 보세운송하여 반입하고, 환급대상 석유화학제품은 블렌딩 탱크로 직반입하였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두 제품을 블렌딩해서 수출물품을 제조한 후 북극항로 운항 선박에 연료유로 공급함으로써 비용절감과 매출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③ 보세공장 제품의 과세방식 선택 기한 연장

◇ 보세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혼용승인·원료과세 사전신청 누락으로 과도한 추징을 받는 사례 방지를 위해, 과세방식 신청 기한을 수입신고 전까지로 확대

□ **[현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 수입 시 아래 3가지 과세방식*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 혼용비율 과세와 원료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원료를 사용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법 §188·§189)

① **제품과세** : 제조된 제품의 세율·가격으로 과세

② **혼용비율 과세** : 제품의 가격을 내·외국 원료의 혼용비율로 배분 과세

③ **원료과세** : 외국 원료의 세율·가격으로 과세

※ 내국원료 20만원 + 외국원료 10만원(세율 3%) ⇒ 제품 90만원(세율 5%) 인 경우

① 제품과세	② 혼용비율(2:1) 과세	③ 원료과세
90만원×5%=45천원	90만원×1/3×5%=15천원	외국원료 10만원×3%=3천원

□ **[문제점]** 소요량 계산서, ERP 등으로 내·외국 원료 내역을 사후에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전신청 누락을 이유로 제품과세 또는 추징 발생

- 모델·규격의 수시 변경에 따른 사전신청 누락의 경미한 실수에도 많은 추징 발생으로 기업 존폐 우려 *(추징사례) D사 235억, T사 60억, H사 47억

□ **[규제혁신]** 수입신고 전까지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 확대

기 존	개 선
원료 사용 전 신청	제품생산 후 수입신고 전까지 신청

□ **[기대효과]** 단순 사전 승인 누락에 따른 과도한 추징을 방지하고, 유리한 방식의 과세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 **[가상 사례]** 농기계 제조 보세공장 D사는 혼용승인 사전신청을 누락하여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 발생하였으나, 신청기한이 수입신고전으로 확대됨으로써 단순 사전 승인 누락 실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조세부담 완화 및 업무 효율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음

3. (Uplift) 신속성 · 효율성 향상

① 야간·공휴일에 先사용 後사용신고 확대

◇ 자율관리보세공장* 원재료를 야간·공휴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된 시점에 관계없이 先사용 後사용신고를 허용하여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

□ **[현 황]** 일반 보세공장에서 외국 원재료를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야간·공휴일에 반입된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야간·공휴일 종료 다음날까지 사후에 사용신고 가능**

* 수출입 안전 우수업체(AEO)로서, 보세사 채용·ERP 열람권한을 제공한 우수 보세공장

** 마약, 총기, 동식물 검역, 방위사업 등 세관장 확인 대상 13개 법 해당 품목은 제외

□ **[문제점]**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해당 야간·공휴일 이전에 반입된 원재료는 해당 야간·공휴일에 先사용·後사용신고 불가능

○ 명절 등 긴 연휴 중에 수주변경, 불량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반입된 원재료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적기 생산 차질

□ **[규제혁신]** 반입 시점에 관계 없이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반입된 모든 원재료를 야간·공휴일에 先사용·後사용신고 할 수 있도록 허용

* 마약, 총기, 동식물 검역, 방위사업 등 세관장 확인 대상 13개 법 해당 품목은 제외

자율관리보세공장 야간·공휴일 先사용·後사용신고 대상	기 준	개 선
	해당 야간·공휴일에 반입된 원재료	반입 시점에 관계없이 모든 원재료*

□ **[기대효과]** 긴급한 보세공장 원재료를 보다 신속하게 제조·공정에 투입함으로써 제조 기간 단축 등 수출 경쟁력 향상

■ **[가상 사례]** 디스플레이 자율관리보세공장 L사는 납기준수를 위해 야간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으나 해당 야간·공휴일에 반입된 원재료만 투입할 수 있어 작업효율이 낮았다. 이번에 반입시점에 관계 없이 원재료를 야간·공휴일에 先사용·後사용신고가 가능해져 신속한 원재료 투입이 가능해졌고, 업무효율성도 높아졌다.

2 보세공장 수출물품에 대한 특송차량 활용 보세운송 허용

◇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을 적재지로 보세운송 시 특송업체(FedEx, DHL 등)의 집하차량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황]** 보세공장 제조 수출물품은 수출신고서에 보세운송인과 운송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써 적재지까지 보세운송신고 같음
 - 보세운송은 보세공장 소유차량 또는 보세운송 등록 차량으로 가능
- **[문제점]** 소형 수출물품은 해외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면서 EXW(공장인도)조건 등으로 운송업체를 특송업체를 지정하는 사례 빈번 발생
 - 특송업체 집하차량(보세운송 미등록 차량)은 보세운송이 불가능해서, 보세공장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다른 차량으로 보세운송
- **[규제혁신]**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을 적재지로 보세운송 시 DHL, FEDEX 등 특송업체 집하차량을 활용한 보세운송 허용

구분	현행	개선
수출물품 보세운송차량	보세공장 소유차량, 보세운송업자 등록 차량	보세공장 소유차량, 보세운송업자 등록 차량 + 특송업체 집하차량*

* 보세공장 운영인은 보세운송업자로, 특송업체 집하차량은 보세운송 차량으로 등록

- **[기대효과]** 보세공장 소형 수출물품에 대한 적재지까지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로 물류 신속화 및 운송비용 절감

■ **[가상 사례]** 그동안 방산 수출업체 H사는 운송비 부담이 EXW, FCA 조건 수출계약 시에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 적재지까지 H사 차량으로 보세운송을 하였지만, 특송업체(FEDEX, DHL 등) 집하차량 보세운송이 허용됨으로써 보세운송절차가 간소화되어 운송 비용이 절감되고 납기준수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

3 우수 보세공장의 「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신속화

◇ 우수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시점을 보세공장 도착보고된 때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로 단축

□ **[현황]** AEO 등 우수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원재료는 품목번호(HSK)를 사전 등록한 경우 입항전 사용신고를 전산에서 자동수리

- 이때, 자동수리 시점은 보세공장에 물품이 보세운송 도착보고된 때임
 - * 해외 출항→적재화물목록 제출→**입항전 사용신고**→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입항→하역→보세운송→반입→도착보고(**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 **[문제점]** 보세운송신고 없이 하선 반입되는 원재료의 경우에는 입항전 사용신고 후 자동수리 제도 활용 불가능으로 보세작업 투입 지연

- *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도 적하목록 심사단계에서 자동수리하고 있음
- 또한, 보세운송신고 물품도 도착보고 전까지 신고수리 여부를 알 수 없어 작업 장비와 인력이 대기하고, 제조·가공 투입도 지연

□ **[규제혁신]** AEO 또는 우수 보세공장의 입항전 사용신고에 대한 전산 자동수리 시점을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로 단축

입항전 사용신고 전산자동수리 시점	기 존	개 선*
	보세운송 도착보고 시	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 시 (4단계 단축)

* 해외 출항→적재화물목록 제출→입항전 사용신고→**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입항→하역→보세운송→도착보고

□ **[기대효과]** 긴급한 보세공장 원재료를 보다 신속하게 제조·공정에 투입함으로써 제조 기간 단축 등 수출 경쟁력 향상

■ **[가상 사례]** 조선 공장 H사는 입항전 사용신고 시 보세운송도착 전까지 신고수리 여부를 알 수 없어 작업장비·인력 등이 준비 상태로 대기해야만 했다.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긴급한 원재료를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 **입항전 사용신고 수리**를 받아서, 보다 신속하게 미군함정 MRO사업에 투입할 수 있었으며, MASGA 프로젝트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4. (Self-Manage) 자율관리 확대

1] 자율관리보세공장 「내국작업* 허가」 생략

* 보세공장에서 내국 원재료만으로 제조·가공하여 내국물품을 생산하는 작업

◇ 자율관리보세공장이 「내국작업」 시 내국작업 허가 및 종료신고를 생략하고, 업체 스스로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절차 간소화

□ **[현황]**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 등을 수행하려면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야 함

○ 「내국작업」을 종료한 경우 내국작업 종료신고를 하여야 함

□ **[문제점]** 「내국작업」 시 허가 신청에서부터 종료보고까지 건수가 연간 약 1만 1천건이며, 관리절차 복잡 등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

○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자재 반출입은 ERP시스템으로 관리되며, 내국작업은 내국물품만의 작업이므로 관세채권 확보가 불필요

※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연구소를 보세공장으로 허용 시(과제 1-1), 빈번한 내국작업을 모두 허가받아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개선효과 미미 및 초격차 기술 개발 지연 우려

□ **[규제혁신]**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해 「내국작업」과 관련한 허가·종료신고 등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

구분	현행	개선
자율관리 보세공장	내국작업 허가(신청) → 내국작업 → 내국작업 종료신고 → 내국물품 반출	허가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업체 자율관리로 전환 (단, 분기별 반출입 내역 제출)

□ **[기대효과]** 「내국작업」 시 세관절차 대폭 감소로 업무관리 부담이 감소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과 신속한 제조 가공 가능

■ **[가상 사례]** 바이오 자율관리보세공장 S사는 연구소는 빈번한 내국작업절차의 이행 곤란으로 보세공장 특허를 포기 할 예정이었으나, 내국작업 허가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연구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받아, 신속한 반입 및 연구 투입이 가능해졌고, 업무 효율성 향상과 초격차 기술 개발이 가능해 졌다.

② 자율관리보세공장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허가」 생략

* 보세공장에서 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타 보세공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 자율관리보세공장이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시 허가 신청,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및 완료보고를 생략하고 자율관리 할 수 있도록 간소화

- **[현황]**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을 하려면 해당 작업허가를 받아 보세운송신고 수리 후 물품을 반출하고 반출입신고를 해야 함
 - 당해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보고를 하여야 함
- **[문제점]**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시 허가신청, 완료보고에 따른 서류작성 및 허가 대기 등 업무 효율성 저하와 공정 투입 지연
 - 자율관리보세공장은 반출입 및 작업내용을 ERP시스템으로 추적관리가 가능하며, 유사한 장외작업에 대해서도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있음
- **[규제혁신]**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해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관련 허가·보고·신고 등을 생략하고 자율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자율관리 보세공장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 작업 허가 → 반출신고 → 보세작업 → 반입신고 → 완료보고	허가·신고·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업체 자율관리로 전환 (단, 분기별 반출입 내역 제출)

- **[기대효과]**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시 세관절차 대폭 감소로 업무관리 부담이 감소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과 신속한 제조 가공 가능

■ [가상 사례] 중장비 제조 보세공장 D사는 다른 보세공장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 보세작업 허가, 물품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 수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쳤지만, 관련 세관 절차 생략으로 신속한 반출입과 제조·공정 투입이 가능해 짐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

3 자율관리보세공장 「장외 일시장치* 허가」 생략

* 거대 중량(부피) 물품을 보세공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일시 보관하는 것

◇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장외 일시장치」 시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관련 허가 신청을 생략 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로 전환하여 간소화

- **[현황]** 보세공장에서 거대 중량(부피) 물품을 보세공장 외 장소에 장치할 경우 세관에 「장외 일시장치 허가」를 받아야 함
 - 당해 물품 반출입 시에는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함
- **[문제점]** 「장외 일시장치 허가」 시 허가신청, 반출입신고 건수는 연간 약 7천건으로 관련 허가신청서부터 반입신고까지 관리 부담
 - 거대 물품의 해상 이동시 날씨(강풍 등)의 영향, 예상 외의 검사 불량 등으로 장외 장치 계획 변경의 수시 발생
- **[규제혁신]**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해 「장외 일시장치 허가」와 관련한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자율관리 보세공장	장외 일시장치 신청·허가 → 반출 → 장외 일시장치 → 반입(보세 운송) 신고	허가·신고·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업체 자율관리로 전환 (단, 분기별 반출입 내역 제출)

- **[기대효과]**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장외 일시장치시 자율관리 적용으로 세관신고 대폭 감소 및 신속한 물류 흐름 확보

■ **[가상 사례]** 선박 수출 보세공장 S사는 장치장소 부족으로 제작된 선박 블록을 장외 장소에 장치를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일시 보세작업 허가, 물품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련 세관 절차가 생략되고 자율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선박건조 업무의 효율성과 보세공장 공간 활용 효율성도 높아서 신속한 선박 건조가 가능해 졌다.

IV.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	시행 시기
1. (Pioneer) 신기술·신산업 지원	
① 첨단산업 연구소 등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	'26.1분기
② 항공기 MRO 산업 유치를 위한 FTZ 반입승인 절차 간소화	'25.4분기 ^{고시} '26.상반기 ^법
③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	'25.4분기
2. (Lower) 비용·세금 절감	
① 첨단 클러스터 보세건설부터 보세공장까지 관리 일원화	'25.4분기
②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혼합·제조 절차 간소화	'26.1분기
③ 보세공장 제품의 과세방식 선택 기한 연장	'26.1분기
3. (Uplift) 신속성·효율성 향상	
① 야간·공휴일에 先사용 後사용신고 확대	'26.1분기
② 보세공장 수출물품에 대한 특송차량 활용 보세운송 허용	'26.1분기
③ 우수보세공장의 「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시점 신속화	'26.1분기
4. (Self-manage) 자율관리 확대	
① 자율관리보세공장 「내국작업 허가」 생략	'26.1분기
② 자율관리보세공장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허가」 생략	'26.1분기
③ 자율관리보세공장 「장의 일시장치 허가」 생략	'26.1분기